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3719 |
|----------|-------|

발의연월일 : 2025. 10. 27.

발 의 자 : 김준형 · 조계원 · 정춘생  
박은정 · 최혁진 · 이해민  
이재강 · 윤종오 · 서왕진  
한창민 · 김재원 · 차규근  
백선희 · 권향엽 · 정혜경  
부승찬 · 강경숙 · 박지원  
전종덕 · 김태년 · 손 솔  
황운하 의원(2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에 관하여 5년 주기 기본계획 및 매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이 해당 계획들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국제정세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가 미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관리·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이 기본계획·집행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고 외교부장관이 이를 분석·평가하도록 하

는 한편,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집행계획,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제6항 및 제22조의2 신설 등).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외공관의 장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재외국민보호 전년도 조치 실적을 매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외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국회 보고)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2. 집행계획
3.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
4. 제7조제7항에 따른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관한 전년도 통계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 제7조(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 음)                                                      |
| <u>&lt;신 설&gt;</u>                | <u>⑤ 재외공관의 장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재외국민보호 전년도 조치 실적을 매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
| <u>&lt;신 설&gt;</u>                | <u>⑥ 외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u>              |
| ⑤ (생 략)                           |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
| <u>&lt;신 설&gt;</u>                | <u>제22조의2(국회 보고)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
|                                   | <u>1. 기본계획</u>                                                                             |
|                                   | <u>2. 집행계획</u>                                                                             |
|                                   | <u>3.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u>                                                              |

|  |                                                     |
|--|-----------------------------------------------------|
|  | <u>4. 제7조제7항에 따른 재외국민<br/>사건·사고에 관한 전년도 통<br/>계</u> |
|--|-----------------------------------------------------|